칠곡군 공고 제2023 - 1154호

「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24일

칠 곡 군



1. 제안이유

송정자연휴양림 시설 보완 및 추가에 따른 시설사용료 산정 및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운영비 증가에 대비하고, 휴양림 예약·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휴양시설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·휴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설의 범위, 휴관일, 이용시간 등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3조 ~ 제5조)
- 나.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 정비(안 별표 1)
- 다.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 규정 정비(안 제7조 및 별표 2)
- 라. 입장 제한 및 퇴장 등에 관한 규정 정비(안 제10조)
- 마.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1조)
- 바.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3조)
- 사. 관리자 예약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4조 및 별지 서식)
- 아. 매매·교환 등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5조)
- 자. 위탁 관리·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6조)

- 차. 준용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 17조)
- 카.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3. 의견제출

-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칠곡군수(참조: 산림녹지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그 사유)
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연락처
 - 다.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칠곡군 산림녹지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메일이나 팩스로 의견서 제출 시 아래 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※ 우)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(칠곡군청)
 - 전화)054-979-6604, 팩스)054-979-6529, E-mail)seoicp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] 자치법규명	: 칠곡군	송정자연휴양	긤 관리	및 선	운영 조리	계 일부개정조례 ⁹	안
○ 성명(단체]명):						
○ 주	소:						
○ 생 년 월	일:						
○ 전 화 번	ই:						

조례안 내용	의	견	비고

4. 자치법규 내용

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"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7"을 "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"로 한다.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송정자연휴양림"을 "자연휴양림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오토캠핑장

제4조제1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"산사태"를 "산사태, 홍수, 태풍"으로, "이용하기에"를 "이용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"제1항제2호"를 "제1항제3호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전까지"를 "전까지(다만,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"로 한다.

2. 설 및 추석 당일

제5조제2항제1호 중 "11시"를 "12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11시"를 "8시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- ④ 제3조제4호에 따른 오토캠핑장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다.
- 1. 입실시간: 사용 첫날의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
- 2. 퇴실시간: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까지

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- 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의9제2항제1호부터 제13 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- 제9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2.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

제10조의 제목 "(입장 제한 등)"을 "(입장 제한 및 퇴장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- 1.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- 2. 위험물·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치하는 사람
- 3.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4.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
- 5.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
- 6.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이 이동 반출하거나 파손 훼손하는 경우
- 7.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-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명령을 받을 경우, 퇴장자가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 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9조로 하고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예약신청 및 예약성립)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

- 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며,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.
-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,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제1항 중 "통합예약시스템 및 자연휴양림 방문"을 "통합예약시스템"으로 한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의 제목 "(이용 신청)"을 "(이용 신청 및 결제)"로 한다.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조(예약제외 시설물 운영)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,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 - 1.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,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
 - 2.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
 - 3.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, 문화행사,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-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·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,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

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제14조(관리자 예약)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 - 1. 관리자 예약의 사유, 사용자, 예약 및 사용 일자,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
 - 2.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 해제
 - 3.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(반기별 1회)
 - ③ 관리운영자는 별시 서식의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이용대장을 작성 ·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매매·교환 등 금지)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·양 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(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.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,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. 다만,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.
- 제16조(위탁 관리·운영) 군수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는 법인·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
- 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, 「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「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

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8조(손해배상) 관리운영자는 자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,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송정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

(제6조제1항과 관련)

1. 일반 기준

- 가. "성수기"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.
- 나. "주말"이란 금요일,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말한다.(임시공 휴일은 제외한다)
- 다. "주중"이란 성수기 및 법정공휴일의 전날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.
- 라. "비수기"란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말한다.
- 마. "단체"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.
- 바. "어린이"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사. "청소년"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아. "군인"이란 제복을 입은 임기제부사관 이하 계급의 군인(사회복무 요원을 포함한다)을 말한다.
- 자. "어른"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- 차. "칠곡군민"이란 주민등록상 경상북도 칠곡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카. "장애인"이란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타. "국가보훈대상자"란「국가보훈 기본법」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.
- 파. "다자녀가정"이란「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(주민증록상 경상북도 칠곡군 거주)을 말한다.

2. 입장료 기준

구 분		분 사용기준 -		.금(원)	비고	
		가중기군	개인	단체	H <u>1</u> 2	
	어른	1인/1일	1,000	800		
입장권	청소년	1인/1일	700	500		
B 6 전	어린이	1인/1일	500	300		
	군인	1인/1일	700	500		

3. 시설사용료 기준

구	보	기 준	사 용	비고	
T	七	/1 正	성수기 및 주말	비수기 주중	11 1 ¹
	32㎡형 (5인 기준)	1동/1박	100,000	60,000	
숲속의집	51㎡형 (6인 기준)	1동/1박	120,000	70,000	
立 つ り 日	64m²형 (6인 기준)	1동/1박	130,000	80,000	
	104㎡형 (12인 기준)	1동/1박	200,000	130,000	
	40m²형 (6인 기준)	1동/1박	90,000	60,000	
산림휴양관	68.m²형 (8인 기준)	1동/1박	150,000	100,000	
	80㎡형 (12인 기준)	1동/1박	180,000	120,000	
	야영데크 (12m²)	1동/1박	30,000	20,000	3m×4m (전기)
야영장	야영데크 (24m²)	1동/1박	15,000	10,000	4m×6m (전기)
	야영데크 (12m²)	1동/1박	10,000	6,000	3m×4m
바비큐장	소형 (3mx4m)	1동/1일	5,000		
717111 8	대형 (4m×6m)	1동/1일	10,000		
오토캠핑장	대형 (100m²)	1동/1박	60,000	40,000	
エエ召づる	소형 (50m²)	1동/1박	40,000	30,000	

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

(제7조제2항과 관련)

구분	감면대상	감면요율	비코
시설사용료	칠곡군민	요금의 30% 할인	
시설사용료 (숲속의집, 산림휴양관, 야영장, 오토캠핑장)	장애인	요금의 30% 할인	
	국가보훈대상자	요금의 30% 할인	
	다자녀가정	요금의 50% 할인	칠곡군 거주 가정

- 1.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예약당사자(또 는 현장예약자) 본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사용 첫날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.
- 2. 요금 감면 서류 미확인 또는 예약내역과 서류상 내용이 상이할 시 감면 적용이 취소된다.
- 3. 시설사용료 감면은 1인 1실에 한하며, 사용료의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.
- 4. 감면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혜택이 많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.
- 5. 시설의 관리·운영 비용을 감안하여 일부 시설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[별지 서식]

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사용대장

(제14조제3항과 관련)

	결
	재

1. 근 무 자

직	성	명	서	명	직	성	명	서	명

2. 관리자 예약내용

0	예	약시	- 유	:
	٠,	,	, ,,	

• 사 용 자 :

• 예약일자 :

• 사용일자 :

• 사용목적 :

3. 이용인원 및 사용실적

이자가스	시 설 사 용 실 적							
입장자 수	주차장	숲속의 집	휴양관	야영장	오토캠핑장	바비큐장	비]	14
14	1 ì	_	2]	тн	гн	тн		
명 	내	동		면	면	면		

4. 특기사항

※ 주요활동사항, 시설보수 및 관리사항, 주요인사방문, 각종사건 등 기재

붙임 1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칠곡군 송정	제1조(목적)
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	
요한 사항과 「산림문화·휴양에	
관한 법률」 제21조의5 및 <u>같은</u>	<u>같은 법 시행령 제9</u>
법 시행령 제9조의7에서 위임된	조의9
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	
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
제3조(시설의 범위) <u>송정자연휴양</u>	제3조(시설의 범위) <u>자연휴양림</u>
<u>림</u> 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오토캠핑장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제4조(휴관일 등) ① 자연휴양림의	제4조(휴관일 등) ①
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<u>2. 설 및 추석 당일</u>
2. (생 략)	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	②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	
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	
1. · 2. (생 략)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산불, <u>산사태</u> 등으로 자연휴양	3 <u>산사태, 홍수, 태풍</u>

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--- 이용하기 -----예상되는 경우 4. ~ 6. (생략) 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③ -----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 와 기간을 자연휴양림 인터넷 홈 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 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(이하 "통합예약시스템"이라 한다)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. 1.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1. 제1항제3호-----지정하려는 경우: 휴관일 7일 전까지 2.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 2. -----는 경우: 이용 제한일 7일 전까 ----- 전까지(다만,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긴급 지 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 다.) 제5조(이용시간) ① (생 략) 제5조(이용시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야영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입실시간: 사용 첫날의 오전 1 1. ----- 12시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

③ 제3조제3호에 따른 바비큐시설 ③ -----사용시간은 사용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. <신 설> ④ 제3조제4호에 따른 오토캠핑장 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 1. 입실시간: 사용 첫날의 오후 1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. 퇴실시간: 마지막 사용일의 오 전 11시까지 (5) ----- 제4항-----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 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 · 퇴실시 간을 변경할 수 있다. 제7조(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제7조(입장료 등의 면제 및 감면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| 2.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제9조의7제2항제1호부 시행령」제9조의9제2항제1호부 터 제5호까지 및 제11호부터 제 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

3. ~ 5. (현행과 같음)

3. ~ 5. (생략)

6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<삭 제>
<u>하는 사람</u>	
7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<삭 제>
8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 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	<u><삭 제></u>
9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	<u><삭 제></u>
<u>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사람</u>	
10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	<u><삭 제></u>
11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<삭 제>
12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	<삭 제>
13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	<삭 제>

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4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 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② (생략)

제9조(위약금) ① · ② (생 략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 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(생략)

<신 설>

2. (생 략)

- 제10조(입장 제한 등) 군수는 다음 제10조(입장 제한 및 퇴장 등)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 - 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 한 법률」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
 - 2.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
 - 3.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 치하는 사람

<삭 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위약금) ① · ② (현행과 같 음)

3	 	 	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제4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 지에 해당하는 경우
- 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-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 |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 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 다.
 - 1.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 품을 소지한 사람
 - 2. 위험물·악취물을 반입하거나 오물 또는 그 밖의 폐기물을 방

품을 소지한 사람

- 4.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 람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 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 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5.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
- 6.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 채집 하거나 흙 • 돌을 채취하는 사람
- 7.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 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사람

<신 설>

<신 설>

제11조(이용 신청) ① 자연휴양림을 <u>제12조(이용 신청 및 결제)</u> ① ·

- 3.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 람. 다만, 「장애인복지법」제40 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 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 우는 예외로 한다.
- 4.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 및 상행위 등을 하는 사람 5. 휴양림 내 동식물을 무단으로 <u>포획·채집하거나</u> 흙·돌을 채 취하는 사람
- 6. 휴양림 내 시설물 등을 허락없 이 이동 · 반출하거나 파손 · 훼 손하는 경우
- 7.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 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
-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퇴장 명령을 받을 경우, 퇴장자가 납부 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③ 관리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의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피해에 대 하여 워상회복하게 하거나 손해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이용하려는 사람은 <u>통합예약시스</u> <u>템 및 자연휴양림 방문</u>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 ②·③ (생 략)

<신 설>

<u>제12조</u> (생 략) <신 설> ----- <u>통합예약시스템</u>--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- 제11조(예약신청 및 예약설립) ①
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
 람은 본인이 직접 통합예약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약신청하여야 하면,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통합예약시스템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.
 -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, 가상계 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 서 예약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.

<u>제19조</u> (현행 제12조와 같음)

제13조(예약제외 시설물 운영) ①

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
영,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
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
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・운영할

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-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,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
- 2.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
- 3.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, 문화행사, 간담회 등 공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·운영은 시설사용 대장등을 통해 관리하며, 그 내용을통합예약시스템등에 게시하여일반국민이알수있도록하여야한다.
- 제14조(관리자 예약) ① 제13조제2 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 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통합예약

<신 설>

<u><신 설></u>

-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 을 예약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 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- 1. 관리자 예약의 사유, 사용자,예약 및 사용 일자,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
- 2.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· 해제
- 3.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 검(반기별 1회)
- ③ 관리운영자는 별시 서식의 자연휴양림 관리자 예약 시설이용대 장을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- 제15조(매매·교환 등 금지)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또는 교환·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.(시도한 경우도 포함한다.)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 림 예약자의 직계 존·비속, 배우 자.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

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 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 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 다. 다만,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 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. 제16조(위탁 관리 · 운영) 군수는 자 <신 설> 연휴양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산림문화 • 휴양에 관한 법률 |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하 는 법인 · 단체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<신 설> 아니한 사항은 「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」, 「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「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 제18조(손해배상) 관리운영자는 자 <신 설> 연휴양림 이용객이 사용기가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물 또는 수목 등에 손실을 끼

쳤을 경우에는 그 이용객이 워상

복구하게 하거나 손실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, 그 이용객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 였을 때에는 관리운영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붙임 2

관련법령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7. 28.] [법률 제19571호, 2023. 7. 25. 타법개정]

- 제21조의5(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2조(자연휴양림등의 위탁)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3. 6. 28.] [대통령령 제335821호, 2023. 6. 27. 타법개정]

- 제9조의9(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)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, 시설 사용료 및 체험료 등(이하 "이용료"라 한다)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·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수 있다. 다만,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경우만 해당한다. <개정 2016. 6. 21., 2017. 12. 29., 2018. 8. 14., 2018. 12. 31., 2020. 6. 2., 2021. 4. 6., 2023. 4. 11.>
 - 1. 국빈 및 그 수행원
 - 2.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
 - 3.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
 - 4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
 - 5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 - 6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
 - 7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(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 와 그 배우자 및 유족
 - 8. 「5・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・18민주유공 자(장해등급 1급・2급・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 와 그 배우자 및 유족

- 9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
- 10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 자(상이등급 1급·2급·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 다)와 그 배우자 및 유족
- 10의2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「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
- 10의3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
- 10의4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(부 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), 의사자유족,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
- 10의5. 「체육인 복지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,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사람 1명(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동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선순위 유족 1명
- 10의6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귀환포로와 대한 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- 1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12. 「산림보호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
- 13.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
- 14.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·군·구에 거주하는 사람
- 15.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
- 16.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.
- 제10조(자연휴양림등의 위탁) ① 법 제22조에서 "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·단체 등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로서 자연휴양림,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·단체를 말한다.
 - 1.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
 - 1의2.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
 - 1의3.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

- 2. 「민법」에 따라 산림문화·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
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4. 독림가,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 단체
-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,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「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

□ 「국가보훈 기본법」

[시행 2023. 6. 5.] [법률 제19228호, 2023. 3. 4. 타법개정]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희생·공헌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 - 가.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
 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 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 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- 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- 3. 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- 제21조의2(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등록증 발급)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등록증을 발 급한다

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칠곡군 송정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하고,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.
- ⑥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곡군 고향사랑 기부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⑦ 제6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는 고향사랑기부 우선예약하고, 1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다.

제6조 및 별지 서식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붙임 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시설사용 예약) ① ~ ③ (생략)	제3조(시설사용 예약) ① ~ ③ (현 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산 림바우처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.
<신 설>	⑤ 제4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 는 산림바우처 우선예약하고, 18
	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 다.
<u><신 설></u>	⑥ 예약가능 시설물 중 일부는 칠 곡군 고향사랑 기부 우선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.
<신 설>	 ⑦ 제6항의 우선예약은 매월 15일 오전 9시 00분부터 20일 18시까지 는 고향사랑기부 우선예약하고, 1 8시 이후부터는 일반예약 접수한 다.
제6조(장부의 비치) 현장책임자는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.	<삭 제>

붙임 2

관련법령

□ 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3. 7. 28.] [법률 제19571호, 2023. 7. 25. 타법개정]

- 제21조의5(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의 징수) ①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,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